

정 관

株式會社 現代百貨店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라고 칭하며, 영문으로는 HYUNDAI DEPARTMENT STORE CO., LTD 라고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종합 소매업
2. 일반 도매업
3. 무역업
4. 공익을 위한 시장개설 및 운영
5. 신용카드업
6. 실내장식업
7. 창고업
8. 부동산 매매업
9.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개발업
10. 인력공급 및 대리업
11.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
12. 미술품 판매, 대여업 및 미술관 운영업
13. 체력증진 및 스포츠사업
14. 공중목욕탕업
15. 피복류 제조 및 판매업
16. 식육가공 및 판매업
17. 전문소매업
18. 사회교육사업, 평생교육업(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원격 평생교육 시설 운영)
19. 보험업무대리점업

20. 종합 체육시설업 (회원제 및 대중제) - 수영장 (실내,외), 체력단련장, 대중사우나, 에어로빅장, 볼링장, 테니스, 다목적홀, 스쿼시, 라켓볼, 체온관리실, 골프연습장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신고 체육시설업
21. 캐더링
2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23. 주택신축 판매업
24. 상가분양업
25. 시설물 유지관리업
26. 골프장 운영업
27. 주차장 관리업
28. 전자상거래업
29. 인터넷 사업
30. 방송채널 사용사업
31. 통신판매업
32. 공연기획업
33. 공연시설운영업
3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35. 의료기기 판매업
36.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37. 여행업
38.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영업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국내외의 각지에 지점, 지사 또는 사무소,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1)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hyundai.com>)에 게재한다.

(2) 다만, 재해,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 1 항의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 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8 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2,167,722 주로 한다.

제 9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칠백만주까지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2%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시켜 배당시키지 않는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6)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우선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10 조 (주식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다. 다만,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주식과 주식 배정의 경우에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에 결정에 의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2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3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2)-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6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의 금융기관에,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보통주식을 보통주식 발행총수의 20/100 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는 우선주식을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25/10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7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 만주 중 적은 수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원 또는 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

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되, 제 1 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제 340 조의 2에서 규정한 가액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본 조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 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2 조 (신주의 배당 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명의개서 등)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전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 (삭제)

제 15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걸쳐 명의개서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채

제 16 조 (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6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 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7 조의 3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3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8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3 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 기타 규정에 정하는 바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2)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4)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그 일시,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헤럴드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

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항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의장)

-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1 조의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정족수와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총회의 질서유지)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 (주주의 결의권)

주주의 결의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의사록의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 회사에 보존한다.

제 5 장 이사

제 27 조 (이사의 선임)

(1) 이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2) 이 회사의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3) 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며,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다.

제 27 조의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8 조 (이사의 원수)

이 회사의 이사회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단,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제 29 조 (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

(2) 사외이사의 총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0 조 (이사의 보선)

(1)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을 한다. 그러나 상법 소정의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8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사의 임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 (이사의 보수)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 34 조 (이사의 책임)

이사는 임무태만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 3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5 조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36 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2)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7 조 (이사회 소집과 결의방법)

(1)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7 일 전까지 각 이사에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 38 조 (대표이사)

이사회는 대표이사 1 명 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제 39 조 (의장)

(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0 조 (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42 조 (위원회)

(1)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보상위원회

- 4. 내부거래위원회
- 5. ESG 경영위원회
-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조직,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7 조 및 제 4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3 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2 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 44 조 (감사위원회)

(1)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 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4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7)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8)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44 조의 2 (감사위원회의 직무)

(1)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5)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4 조의 3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5 조 (경영진)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제 46 조 (고문 등)

(1) 대표이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업무상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계 산

제 47 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48 조 (재무제표의 작성, 설치)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대차대조표

(1)-2 손익계산서

(1)-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일주간 전부터 본점에 5 년간, 지점에 3 년간 그 등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9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 이익준비금 현금배당액의 10 분의 1 이상
- ② 기타의 법정적립금
- ③ 배당금
- ④ 임의적립금
-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⑥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 50 조 (이익의 배당)

(1)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단,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액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제 3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5)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51 조 (중간배당)

(1)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의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①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 ②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③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④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⑤ 중간배당에 따른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 9 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율을 적용한다.

제 52 조 (이익소각)

(1)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 소각의 목적, 소각할 주식의 종류 및 소각의 시기와 방법 등, 이익소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계 법령상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부 칙 (2002. 9. 30)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2002 년 11 월 1 일부터 동년 12 월 31 일
까지로 한다.

제 3 조 (현물출자)

당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물출자자 : 분할 전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2. 현물출자의 내용 : 분할 전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분할로 인한 현
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분
할계획서상 <6.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i)제 7 조 "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
사의 재산과 그 가액", (ii)제 3 조 "분할당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
류별 주식의 수, (iii)제 4 조 "신설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등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 4 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5 조 (내규)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써 업무상 필요한 세칙이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5. 3. 18)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5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사의 시차임기제)

(1) 제 3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1 그룹, 2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
룹별 이사수를 정한다.

(2) 제 29 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3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제 1 그룹에 속한 이사는 다음 두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제 2 그룹에 속한 이사는
세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를 가진다.

부 칙 (2008. 3. 21)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 6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규정)

제 6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3. 19)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 8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 4 조의 개정 내용은 2010 년 5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18)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 9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0)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 13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3)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 16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2)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 17 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7 조, 제 7 조의 2, 제 13 조의 3 항, 제 15 조의 1 항, 제 17 조의 2, 제 17 조의 3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전 정관 제 7 조, 제 13 조의 3 항, , 제 14 조, 제 15 조의 1 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유효하게 적용된다.

부 칙 (2020. 3. 25)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 18 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4)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 19 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8)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 20 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8)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 21 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26)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 22 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